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윤기섭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윤기섭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3473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2.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최호정 의원 외 26명

나. 의안번호 : 제3490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3.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3496호

다. 제출일자 : 2026. 2. 9.

라. 회부일자 : 2026. 2. 12.

II. 제안사유

1. 윤기섭 의원 대표발의안

- 노원구에 건립 중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장애·비장애 통합 공공체육시설) 내에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함께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동일 시설 내 주차장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 운영될 경우 이용자 혼선 및 관리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시립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나, 해당 시설 내 공영주차장까지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조례에 부재함.
-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 간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서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함.

2.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 택시운수종사자는 근무 여건 상 도심 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환경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화장실 이용 중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확대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관리자의 책임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점검 및 사고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와 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차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윤기섭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를 신설함. (안 제10조제6호)

2.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 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 30분 이내 무료주차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7호제1항제15호다목 신설)

3.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 나.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6항 신설)

IV. 참고사항

1. 윤기섭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2. 20. ~ 2026. 02.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동일 시설 내 주차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분리 운영함에 따라 민원발생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운영시간과 주차요금 등의 이원화로 이용자 혼선 및 관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와 같은 시 체육시설 내 공영주

1)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차계획과-7663호(2026. 2. 23.)

차장의 위탁을 서울시체육회 및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허용하는 요건을 명확히하는 의원발의 안대로 수용하고자 함

2.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20. ~ 2026. 2.24.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²⁾

- (주차계획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상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용화장실 30분 무료이용에 대한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의원발의안대로 수용하고자 함

- (택시정책과)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이므로 택시기사가 화장실 이용을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지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감은 적을

2) 주차계획과-7663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26.2.23.)

택시정책과-6778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6.2.20.)

것으로 판단되며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효과가 기대됨

3.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2.20. ~ 2026. 2.24.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원안가결³⁾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여 운영중임
-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의 안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원발의 안대로 수용하고자 함

3) 주차계획과-7633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26.2.23.)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윤기섭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4)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5)에 따른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되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주차장법」 제8조제2항6) 및 제13조제3항에서는 공영

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6)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수탁자 자격과 위탁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7)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법인이나 주민자율조직, 시장 상인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를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위탁 현황

(’26년 1월 기준)

구 분		총 계		노 상		노 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총 계		124	18,218	57	1,500	67	1,6718
공 단 직 영		44	12,652	9	68	35	12,584
제3자 위탁	소 계	80	5,566	48	1,432	32	4,134
	민간업체	60	4,423	40	1,278	20	3,145
	자치구	16	1,079	4	90	12	989
	상인회	4	64	4	64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례⁸⁾가 있고 실제 노원구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26년 6월 개관될 경우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이원화⁹⁾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시립체육시설 내 공영주차장을 체육회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체육회 등은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라는 공영주차장 운영 취지에 맞는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밖에도 체육시설 내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할 것으로 향후 주차계획과 등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8)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및 사업부지 재산이관 계획' 체육정책과-13813(2018. 12. 19.)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수락산 환승주차장) 등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운영 계획' 체육정책과-12087(2025. 10. 31.) 9p
- 부설·공영 주차장 간 운영 방안 협약 등 추진

9)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운영검토_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장 운영현황>

- 위 치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노원구 상계동 1268), 개관: '26년 6월 예정
- 연면적 : 건물 14,779㎡/ 주차장 5,622㎡

구분	총 구획수	지하2층	지하1층	지상층
계	166	141	13	12
공영	74	74(전기차 4면 포함)	-	-
부설	92	67	13	12

<부설·공영 주차장 운영방안>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수탁운영업체에 공영주차장 위탁
- 운영주체 일원화를 통해 주차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관리 효율화 도모 등

2.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이용 시 화장실 사용 목적에 한하여 30분 이내 무료주차를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택시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도심을 운행하는 근무 특성상 화장실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정차 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 위험을 감수하거나 생리현상을 장시간 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장에서는 승객 대기 중 차량을 이탈하기 어려워 화장실 이용을 미루거나, 수분 섭취를 줄이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생·건강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¹⁰⁾

10) 아시아타임즈('25.8.6.)- “불일도 눈치”.. 화장실 없는 도로 위, 택시기사들의 수모
교통신문('25.11.27.)- “서울 택시기사들,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못간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유소 등이 공중화장실로 등록된 경우 개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안전 등의 사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어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서울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노외 공영주차장은 67개소(직영 35, 위탁 32)이며 그 가운데 개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 곳¹¹⁾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이내 무료주차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1) 직영 노외주차장 중 화장실 이용가능 공영주차장 현황 ('26.2.기준)

구분	유형	개방화장실 유무	주차장명
직영 (35개 소)	노외	O	동대문, 사당노외, 세종로, 신설동, 신천유수지, 별우물, 양재역, 용산주차빌딩, 잠실역, 종묘, 중곡1동, 천호역, 훈련원공원(13개소)
		X	가양라이프, 동구로, 서울글로벌센터, 수서역, 신대방역, 영등포구청역, 장안1동, 학여울역, 한강진역(9개소)
	노외 (환승)	O	개화역, 구파발역, 도봉산역, 북정역, 신방화역, 천왕역(6개소)
		X	개화산역(1개소)
	정기권전용	-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월4동, 일원터널(3개소)
	기계식	-	웃우물, 장안2동(2개소)
	관광버스	-	남산예장(1개소)

※참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26년 2월 기준)

- ① 위탁 업무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② 시설 현황 : 124개소, 18,218구획
 - 공단 직영 : 44개소 12,652구획
 - 제3자 위탁 : 80개소 5,566구획(민간업체 60, 자치구 16, 상인회 4)

구 분		총 계		노 상		노 외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총 계		124	18,218	57	1,500	67	1,6718
공단 직영		44	12,652	9	68	35	12,584
제3자 위탁	소 계	80	5,566	48	1,432	32	4,134
	민간업체	60	4,423	40	1,278	20	3,145
	자치구	16	1,079	4	90	12	989
	상인회	4	64	4	64		

- ③ 위탁 기간 : 3년('24.1.1 ~ '26.12.31)
- ④ 주차수입('25년) : 28,820 백만원
- ⑤ 이용요금 :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 택시는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은 안전운행 및 시민 서비스 질과도 직결되고, 도심 을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 영노외주차장에 대해 일정 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을 보장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제한적인 지원 범위 내에서 운 수종사자의 기본적 건강권 보호와 안전운행 유지, 근무환경 개선 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기본 회차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고, 대상 택시차량¹²⁾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실제 화장실 이용여부 확인 방식, 무료주차 시간 초과 시 요금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성흡제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관리자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요구에 따라 2024년 전기자동차

12) 서울시 영업용택시 현황('25년 12월말 기준, 단위:대)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2
계	72,007	71,892	71,828	71,805	71,781	71,767	71,732	71,693	71,677	71,616
법 인	22,738	22,643	22,603	22,603	22,603	22,603	22,603	22,603	22,603	22,567
개 인	49,269	49,269	49,225	49,202	49,178	49,164	49,129	49,090	49,074	49,049

누적 보급 대수¹³⁾는 2018년 대비 약 11.6배(2018년 55,756대 → 2024년 647,446대) 증가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¹⁴⁾하면서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별첨1)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¹⁵⁾하는 등 주차장 내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별첨2)

13) 전기차 등록현황(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4.9월 기준)

- 서울시 전기차 보급 현황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건수	81,088	9,564	5,388	8,441	17,171	18,763	13,610	8,151

- 전국 전기차 보급 현황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건수	647,446	55,756	34,162	45,044	96,481	158,412	154,045	103,546

-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5(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기축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8년 3건 → 2023년 72건), 2023년 발생한 화재원인 중 원인미상(23건)을 제외하고는 전기적 요인(17건)이 상당부분 차지¹⁶⁾하고 있어 충전시설 및 전력설비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시 고전압 배터리팩에서 방출되는 압력과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염이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전기차 구역에서 화재발생시 인접 전기차 등으로 화재가 전이되는 속도가 빠르므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조치가 중요함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전력설비를 수반하는 특성상 일반자동차에 비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

16) 2018년~2024년 6월간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현황(출처: 소방청)

구분	화재건수	발생원인						
		미상	전기	부주의	교통사고	기계	화학	기타
2018년	3	0	1	1	0	1	0	0
2019년	7	1	2	0	2	2	0	0
2020년	11	5	0	0	4	2	0	0
2021년	24	5	7	6	2	0	2	2
2022년	43	13	11	9	3	3	0	4
2023년	72	23	17	11	13	3	0	5
2024년(6월)	29	1	8	8	5	2	5	0
계	189	48	46	35	29	13	7	11

용자의 행동 요령, 일반건축물의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복구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배포¹⁷⁾하였음

또한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¹⁸⁾ 제정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공공기관 및 판매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피난 및 초기대응 요령과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¹⁹⁾을 제작·배포한 바 있음

-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확대 및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 현실화, 중앙정부 및 소방당국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 및 사고 대응에 대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담은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17) 국토교통부 ‘일반건축물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매뉴얼’(25.3.)

18)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서울시소방재난안전본부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24.12.)

[별 첨1]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 관련 기준

구분		내용		관련법규
전용구역설치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 소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설치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호
전용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22.1.28 이후 허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22.1.28 이전 허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기축시설)		
충전시설의 종류	급속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 40kW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완속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 40kW미만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주택건설 기준 규칙	'23.6.30 일까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
		'23.7.1.~ 24.12.31.	7%	
		'25.1.1 이후	10%	

[별첨2] 서울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26.1.31.기준, 단위:기, %)

시설유형	세분류	충전기수(기)			비율(%)	
		합계	급속	완속		
합계		82,670	6,185	76,485	100	
공동주택 등	아파트, 빌라, 주택 등	59,891	874	59,017	72.4	
업무시설	업무시설	6,156	539	5,617	7.4	
근린생활시설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942	113	829	1.1	
공공시설	공공기관	2,172	724	1,448	2.6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등	2,730	1,306	1,424	3.3	
상업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2,491	558	1,933	3.0	
기타시설	-	8,288	2,071	6,217	10.0	
	교육문화시설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1,980	213	1,767	-
	버스차고지	전기버스용 충전기	1,150	1,150	-	-
	택시차고지	전기택시용 충전기	257	228	29	-
	기타시설	병원, 공장, 숙박시설 등	3,850	480	3,370	-
	비공용(개인용)	비공용 충전기	1,051	-	1,051	-